2020년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6. 1.(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8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40건(안건번호 제2020-34919호~3712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4919호는 유명 가수의 자작곡 음원 파일을 무단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자 겸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4920호~34940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4941호~3500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5011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건번호 제2020-35010호와

동일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37119호~37120호는 게시자가 해외 애니메이션 한화 전체 분량을 직접 우리말로 더빙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시한 사안임. 저작재산권제한사유 판단과 별개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82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9건(안건번호 제2020-2355호~2413호)

- 회의결과: 59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9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건(9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 모두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8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9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쪽~26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복제물을 검색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

- C 위원: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비공개 쪽수를 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쪽~26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워너브라더스', '월트디즈니컴퍼니', '넷플릭스', '유니버설픽쳐스', '학산문화사' 등임. 위원님들 중에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으신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34919호~3712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940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919호

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네이버 이용자가 2011. 11. 17. “☆☆☆☆☆☆☆☆☆☆☆☆☆☆☆☆☆☆☆☆☆☆☆”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우리나라 가수 ‘★★★’이 데뷔 전 만든 자작곡의 MP3 음원파일 및 토렌트 파일을 제공함. 토렌트 파일은 시드가 없어 다운로드 되지 않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총 9개의 음원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 “●●●●●●●●●●●●●●●●●●●●●●●●●●●●●●●”등 댓글이 많이 달려 있음.
(‘◎◎◎◎’ 음원파일을 재생하면서)실제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음원이 재생됨. 해당 음원은 이미 공표된 음원인 ‘◎◎◎◎’임.
(‘◇◇’ 음원파일을 재생하면서)해당 음원은 현재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음원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9개 음원 중 일부는 ‘◆◆◆◆◆◆’ 데뷔 이후 ‘◆◆◆◆◆◆’ 앨범이나 ‘★★★’ 개인 앨범을 통해 정식 공개되고 있고, 일부는 앨범에 수록되지 않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파일은 공식 앨범에 수록된 음원과 다른 버전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파일은 해당 가수가 데뷔하기 전에 공표한 곡으로 보임.

- C 위원: 두 음원파일의 이름이 같아도 서로 다른 음원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음원파일명이 같아도 서로 다른 음원인 것

으로 확인됨.
(웹사이트에서 '◎◎◎◎'를 검색하면서)해당 가수의 '◎◎◎◎' 음원은 2012. 3. 29. 앨범 '◆◆◆◆◆◆'에 수록되어 발매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2011. 11. 17.에 업로드되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파일은 해당 가수 본인만 음원파일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시자가 어떻게 업로드할 수 있었는지 의문임.

- 사무처 이다해 선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데뷔 전부터 자작곡을 만들어 공표한 것으로 보임. '나무위키'에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과거에 촬영한 동영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491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유명 가수의 자작곡 음원 파일을 무단 제공한 사안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해당 사안은 저작자 겸 저작인접

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491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920호~3494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21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폐쇄적인 밴드가 아니라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건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밴드 회원 수, 밴드명이 정리되어 있음. 안건번호 제2020-34920호~34940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은 '□□□□□□□', '■■■■■■■■■', '△△△△△△△△△△△△△△△△△△△△', '▲▲▲▲▲▲▲▲▲▲▲▲▲▲▲' 등임. 밴드 회원 수는 모두 100명 이상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시어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폐쇄적 성격이 강하므로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밴드 내 게시물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입장과 전체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4920호~349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사안들은 영화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는 아니지만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고,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밴드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시정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4920호~349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941호~350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87건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사의 ‘Photoshop’,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건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특이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해당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

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저작재산권자가 본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대법원은 이른바 '오픈캡쳐' 사건에서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중에는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음.

- A 위원: 해당 안건표를 보니 요즘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쓰이는 'Bandicam'도 불법복제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4941호~3500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4941호~350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501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501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35011호는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이므로 부결해야 함.

- C 위원: 동의함. 안건번호 제2020-35010호와 중복된 안건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 B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501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119호, 3712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37119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2020. 1. 13. "▽▽▽▽▽▽▽▽▽▽▽▽▽▽▽▽"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미국 애니메이션 '▼▼▼▼▼▼▼▼▼▼▼'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제목에 "◁◁◁"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 "◀◀◀◀◀◀◀◀◀◀◀◀◀◀◀◀◀◀◀"라고 밝히고 있음.
  (영상물을 재생하면서)게시자가 '▷▷▷▷▷▷▷▷▷' 팬카페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대사를 이용하여 직접 한국어로 더빙한 것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는 2019. 12. 7.부터 2020. 3. 27.까지 미국 '▶▶▶▶▶▶▶▶'에서 방영하였고, 한국어 더빙판은 정식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C 위원: 게시자 혼자서 더빙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B 위원, D 위원: (영상물을 확인해보니)게시자 혼자서 더빙하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37120호는 성우 커뮤니티인 '♤♤♤♤♤♤' 카페 이용자가 2018. 2. 20. "♠♠♠♠♠♠♠♠♠♠♠♠♠♠♠♠♠♠♠♠♠♠♠♠♠♠♠♠♠♠"라는 제목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 "♥♥♥♥♥♥♥♥♥♥♥♥♥♥♥♥♥♥♥♥♥♥♥♥♥♥♥", "♧♧"라고 적혀 있음.
(영상물을 재생하면서)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게시자가 직접 한국어로 더빙한 것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는 2013. 12. 1.부터 현재까지 미국 '♣♣♣♣♣'에서 방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현재까지 나온 모든 에피소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어 더빙판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D 위원: 안건번호 제2020-37120호 영상물은 성우 커뮤니티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지 안건번호 제2020-37119호 영상물보다 더빙 퀄리티가 더 높아 보임.

- C 위원: 성우 지망생이 더빙한 것이 아닐까 함.

- D 위원: 같은 생각임.

- C 위원: 해당 카페에서 팬더빙 관련 게시물은 심의대상 게시물 하나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카페의 '◉◉◉◉◉◉' 목록을 보여주면서)해당 카페에 팬더빙 관련 게시물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함. '◈◈◈◈

◈◈◈◈◈◈◈◈◈◈◈◈◈◈◈◈◈◈’ 게시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영상물은 더빙 수준이 높아 보임.

- C 위원: 해당 카페는 오픈되어 있는 카페인지?

- 사무처 이다해 선임: 해당 카페는 가입하여야 게시물을 볼 수 있음. 하지만 해당 게시물의 경우 ‘검색 및 서비스공개 허용’ 여부에서 전체공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119호~37120호 블로그나 카페는 불법복제물 공유나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존 심의위원회는 우리말 더빙 영상물에 대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었음. 우리말 더빙 영상물 대한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 논의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담아 두었음.

- D 위원: 해당 블로그나 카페에서 ‘▼▼▼▼▼▼▼▼▼▼’, ‘♡♡♡♡♡’ 방송물의 팬더빙 영상물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0-37119호 블로그에서 방송 ‘▼▼▼▼▼▼▼▼▼▼’의 스틸컷을 제공하고 있지만 팬더빙 영상물은 심의대상 게시물 하나인 것으로 보임.

- D 위원: 해당 사안은 블로그에서 연속적으로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영상물은 더빙 수준이 높지 않은 팬더빙인 점에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함.

- B 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회의록을 보면 ▣▣▣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함. 최신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팬카페에서 친목 도모를 위해 팬더빙한 영상물에 관한 사안까지 심의위원회가 시정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해당 권리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37119호의 경우 해당 영상물은 더빙 수준이 높지 않음. 안건번호 제2020-37120호의 경우 성우 커뮤니티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게시자가 더빙 영상물을 올리면서 실력을 체크받는 것으로 보여 불법복제물 공유가 목적이 아닌 선한 의도라고 생각함.

- A 위원: 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임.

- B 위원: 팬더빙 영상물을 보니 오히려 원래 저작물이 보고 싶어짐.

- D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 방법의 일환이라고 한 이유임. 이번 사안은 오히려 산업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7119호, 371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게시자가 애니메이션을 직접 우리말로 더빙하는 것은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행위로 판단됨. 오히려 산업적으로 볼 때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워 합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권리자의 직접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더빙 퀄리티, 게시 목적, 형식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것은 본래의 시정권고 취지를 다소 벗어난다고 생각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팬더빙은 친목 성격의 모임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7119호~371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5012호~3711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5012호~37118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5012호~3711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동의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5012호~3711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5011호, 제2020-37119호~37120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건번호 제2020-34919호~35010호, 제2020-35012호~3711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8면부터 35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355호~2413호 59개 계정{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9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건(9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 모두 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